

별첨

'9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귀하

1991년 8월 10일

우리는 1991년 7월 15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받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1990년도 세입·세출 내역을 예산회계법 및 지방제정법,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는 광주직할시 서구청의 예산집행 내역의 보다 적정한 이해를 위하여 첨부된 것입니다.

대표검사위원 서구의회의원 김 기

검사위원공인회계사 백 창 현

검사위원세무사정찬술



목 차

1. 예산대 집행실적 요약 및 분석
 - 1) 세입 결산
 - 2) 세출 결산
 - 3) 세계 잉여금
 - (1) 명시 이월
 - (2) 사고 이월
 - (3) 예산 절감 내용 검토
2. 재 산 관 리
3. 채 무 관 리
4. 물 품 관 리
5.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6. 기타 건의사항

1. 예산대 집행실적 요약 및 분석

1) 세입결산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A)	수 입 액 (B)	차 액 (C)	비 율 (A=B)
보 통 세	3,652,000,000	3,897,329,780	245,329,780	6.71
목 적 세	530,000,000	626,795,190	96,795,190	18.26
과 년 도 수 입	103,000,000	49,168,410	△ 53,831,590	△ 52.26
(지 방 세 계)	4,285,000,000	4,573,293,380	288,293,380	6.73
경 상 적 수 입	1,638,838,000	1,931,480,354	292,642,354	17.86
일 시 적 수 입	4,475,154,000	4,799,570,990	324,416,990	7.25
(세 외 수 입 계)	6,113,992,000	6,731,051,344	617,059,344	10.09
조 정 교 부 금	9,392,000,000	9,392,000,000	-	-
(지 방 교 부 세 계)	9,392,000,000	9,392,000,000	-	-
국 고 보 조 금	5,452,377,000	5,387,773,000	△ 64,604,000	△ 1.18
시 비 보 조 금	4,876,302,000	4,822,350,000	△ 53,952,000	△ 1.11
(보 조 금 계)	10,328,679,000	10,210,123,000	△ 118,556,000	△ 1.15
(지 방 채)	660,000,000	660,000,000	-	-
(일 반 회 계 합 계)	30,779,671,000	31,566,467,724	786,796,724	2.56
의 료 보 호 기 금	1,502,422,000	1,502,281,378	399,378	0.03
특 별 회 계				
영 세 민 생 활 안 정	122,311,000	121,526,476	△ 784,524	△ 0.64
특 별 회 계				
(특 별 회 계 합 계)	1,624,733,000	1,624,347,854	△ 385,146	△ 0.02
세 입 회 계 총 계	32,404,404,000	33,190,815,578	786,411,578	2.43

〈분 석〉

- 종합적으로 예산액에 세입이 약 2.43%초과 달성되었으며 이는 주로 보통세 245백만원 초과 징수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의 97% 징수로 미수납액이 914백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33%인 302백 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 또한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에 약 48%의 징수로 부진한 실정에 있으며
- 이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 과년도 수입액을 예산에 계상시 적정성을 제검토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행정력 강화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세출결산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A)	집 행 액 (B)	잔 액 (C)	비 율 (A:B)
의 회 비	301,000,000	293,869,630	△ 7,130,370	△ 2.37
일반행정비	9,738,640,000	9,181,163,570	△ 557,476,430	△ 5.72
사회복지비	12,188,663,000	10,964,012,270	△ 1,224,650,730	△ 10.05
산업경제비	505,429,000	471,595,220	△ 33,833,780	△ 6.69
지역개발비	6,585,386,660	5,169,905,320	△ 1,415,481,340	△ 21.49
문화및체육비	350,489,000	304,144,860	△ 46,344,140	△ 13.22
민 방 위 비	549,422,000	474,602,580	△ 74,819,420	△ 13.62
자원및기타경비	695,142,000	223,103,790	△ 472,038,210	△ 67.91
(일반회계합계)	30,914,171,660	27,082,397,240	△ 3,831,774,420	△ 12.39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02,422,000	1,502,422,000	—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122,311,000	120,000,000	△ 2,311,000	△ 1.89
(특별회계합계)	1,624,733,000	1,622,422,000	△ 2,311,000	△ 1.89
세입회계총계	32,538,904,660	28,704,819,240	△ 3,834,085,420	△ 11.78

〈분 석〉

- 전체적으로 예산액에 대해 88%만을 집행하므로써
- 이는 예산 절감을 적절히 하였다고 볼수도 있겠으나
- 또 한편으로는 예산 과대 계상되었다고도 사퇴되며
- 예산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 일반회계중, 일반 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산절감액이 3,669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3) 세계잉여금

(단위 : 천원)

구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잉여금처분내역			
				명시	사고	보조금	순세계
계	33,190,815	28,704,819	4,485,996	836,745	495,323	109,014	3,044,914
일반회계	31,566,467	27,082,397	4,484,070	836,745	495,323	109,014	3,042,988
특별회계	1,624,348	1,622,422	1,926				1,926

(1) 명시 이월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합계	836,745	836,745	
주민등록전산카드구입	43,745	43,745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	793,000	793,000	

- 주민등록전산카드구입에 대해 국내 생산이 되지 않아 외자 구입으로 이월 되었고
- 노인종합복지회관건립은 사업추진계획이 90. 11월에 수립되었고
- 다수의 노인이 활용 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매수 기간이 지연 됨으로 인하여 이월 된것으로 인정됩니다.

(2) 사고 이월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금 액	이월액	사 유
		행위일	금 액			
합 계	2,610,244		2,549,323	2,054,000	495,323	
양3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1,870,551	1990.12.21	1,859,586	1,692,555	167,031	공기부족
삼익아파트 진입로개설공사	732,743	1990. 9.10	682,913	356,237	326,676	토지보상 지연 으로 공기부족
지방하천보상금	6,950	1990.12.27	6,824	5,208	1,616	하천보상금 수령지연

〈분 석〉

- 사고이월은 연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 상기 사고이월 예산내역은 그 집행과정이 복잡한 사업으로서 광주직할시에 인가신청, 감정의뢰, 도시계획 세목정정등의 절차가 1990년 9월에 끝났고, 또한 개별필지별 보상이 연도말 현재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차년도에 적절히 수행되리라 생각됩니다.

(3) 예산 절감 내용 검토

<예산 및 집행 명세(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익년도 이월	불 용 액
의 회 비	301,000	293,870	—	7,130
일 반 행 정 비	9,738,640	9,181,164	43,745	513,731
사 회 복 지 비	12,188,663	10,964,012	793,000	431,651
산 업 경 제 비	505,429	471,595	—	33,834
지 역 개 발 비	6,585,386	5,169,905	495,322	920,159
문 화 및 체 육 비	350,489	304,145	—	46,344
민 방 위 비	549,422	474,603	—	74,819
지 원 및 기 타 경 비	695,142	223,104	—	472,038
계	30,914,171	27,082,398	1,332,067	2,499,706

<분 석>

- 종합적으로 약 25억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역개발비 절감액 920백만원에 기인하고 있으며, 가장 절감률이 높은 부분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로서 이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재산관리(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 대한 '89년말 현재 평가액은 470억9천8백만원 이었으나 '90년도에 41억2백만원이 증가되어 '90년말 현재는 512억1백만원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용도별	'89년 말 현재액	'90년도 중 증감액		'90년도 말 현재액
		증	감	
계	47,098,410	10,169,362	△ 6,066,487	51,201,286
행정재산	46,576,838	9,898,211	△ 5,922,365	50,552,684
보존재산				
잡종재산	521,575	271,151	△ 144,122	648,601

〈분 석〉

- 행정재산의 증·감은 기부채납 도로개발로 도로부지 매입관리전환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고
- 잡종재산 증감도 용도 폐지 관리전환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등에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3. 채 무 관 리

채무관리는 지방채와 차입금외 89년도말 현재액이 10억 6천 3백만원인데 '90년도에 6억 6천만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었고 6천 1백만원이 상환되어 '90년도말 현재액은 16억 6천 2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종 류 별	'89 년 말 현 제 액	당 해 년 도 증 가 액			'90년도 말 현 제 액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계	1,063,174	599,056	660,000	60,943	1,662,230
지 방 채	706,000	420,000	420,000		1,126,000
차 입 금	357,174	179,056	240,000	60,943	536,230

- 지방채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재무부 특별자금임.
- 차입금은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지방 행정 공제회에서 차입한것임.

4. 물 품 관 리

물품관리는 자동차 등 8종의 장비의 '89년말 현재 평가액이 7억 9천 7백만원이었으나 당해년도 구입에 따라 2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90년말 현재는 10억 4천 5백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음.

단위 : 천원

종 류 별	89년도 말 현재		당해년도 증감액		90년도 말 현재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289	797,097	79	248,262	368	1,045,359
자동차 및 기동장비	21	234,262	6	68,058	27	302,320
특 수 산업기계	68	179,932	7	1,773	61	175,159
난 방 및 환경장비	60	112,566	20	34,052	80	146,618
통 신 기계류	11	35,372	35	97,530	46	132,902
전 기 전 차 장 비	8	7,914	1	500	9	8,414
사 무 용 비 품	93	184,323	24	49,895	117	234,218
의 료 용	19	32,854			19	32,854
시험검사용 장 비	5	6,374			5	6,374
기 타 장 비	4	6,500			4	6,500

〈분 석〉

행정 주요 증가 및 전산화에 부흥 통신 및 전산 기동장비, 사무용 비품 등 구입으로 증가 요인 발생 된 것으로 시표됨.

5.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서는 보관금, 기부금을 합하여 '89년말현재 1억 6천 8백 만원을 관리해왔으나 당해년도에 16억 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15억 4천 9백 만원을 지출하여 '91년도말 현재는 2억 2천 1백원을 관리하고 있음.

단위 : 천원

종 류 별	89년 말 현 재	증 감 액		당해년도 말 현재액	비 고
		증 가 액	지 출 액		
계	168,235	1,602,465	1,549,135	221,565	
보 관 금	141,219	1,508,953	1,461,680	188,492	정기예금 120백만원
성 금 기 부 금	27,016	93,512	87,455	33,073	

○ 보 관 금 - 도로굴착복구비, 형진변경복구비, 원상복구예치금 등

○ 성금·기부금 - 이웃돕기성금, 재해의연금 등

6. 기타 건의사항

1. 결손처분에 대한 검토

- 1) 미수금에 대한 징수노력이 보다 요망되며, 또한 결손대상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실질적으로 결손대상을 결손처리 못한 경우 차년도 세입예산의 과대계상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 3) 국세가 결손처리된 것은 지방세도 결손처리 되어야 하나 국세만 결손처리되는 경우가 있는지 재검토하여 만약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원보충에 대한 검토

- 1) 세무직이 따로 없고 행정직이며, 세무직으로 2년정도 재직해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가능하나, 평균 1년 정도 재직하고 있으므로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2) 따라서 세무전문직 공무원제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세무지식을 갖고 있는 자의 별정채용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